

공기업·공공기관 대상 공정거래교육



| 목 차

I . 공정거래법 개관

II . 부당공동행위

III . 불공정거래행위

IV . 부당지원행위

1. 공정거래법 개관

공정거래법 개관

기업 거래구조별 공정거래 이슈



공정거래법 개관

공정거래법의 목적 및 헌법적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119조 제2항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개관

공정거래법이 보호하는 법익

경쟁(Competition)



담합



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
- 사업활동방해
- 시장진입방해
- 경쟁사업자 배제 및 소비자 이익저해

공정성(Fairness)



재벌/기업집단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
- 경쟁사업자배제
- 부당한 고객유인
- 거래상지위남용
- 구속조건부거래
- 사업활동방해

공정거래법 개관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정책, 소비자정책 관련 **13개 법률** 운용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정책(5)

-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 가맹사업법
- 대규모유통업법
- 대리점법

소비자정책(8)

- 소비자기본법
- 약관법
- 방문판매법
- 제조물책임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할부거래법
- 전자상거래법
-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개관

공정거래법 준수가 중요한 이유

1 경쟁법 집행의 전 세계적 강화 추세

- 공정위 담당 조직 및 인력 증대
 - ✓ 세계 6위권 경쟁당국으로 평가
- 사건 수 증가 및 과징금 액수 급증
- 미국·EU·중국 등 경쟁당국의 집행 강화 및 경쟁당국간 공조 강화 추세
 - ✓ 미국·EU 등 주요 경쟁법은 역외적용 규정을 통하여 국외 행위도 규제 가능

2 위반 시 엄중한 처벌 및 불이익

- 시정명령, 과징금
 - ✓ 관련매출액의 최대 20% (개정법으로 2배 상향)
- 형사책임 (3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 법인/임직원 개인 모두 처벌 가능)
-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 기업의 신용도 / 브랜드 이미지 손상
- 사업모델 / 거래구조 유지 및 계약 이행의 어려움
- 조사대응 비용

공정거래법 개관

의무고발요청제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 위반사항 통지에 대해 중소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고발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14.1월 도입)

근거 : 공정거래법 제129조, 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 심의위원회 구성(7인 이내) :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위원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 기타 중기부장관 위촉인(교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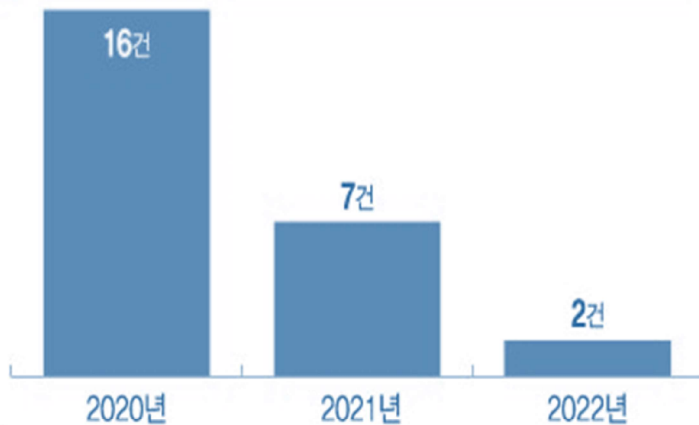
공정거래법 개관

의무고발요청 추이

2020~2022년 1~7월 의무고발요청 추이

☑ 의무고발요청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고발하지 않았을 때
검찰, 감사원, 중소기업벤처부, 조달청 등이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



*자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 윤선정 인턴

* 출처: 머니투데이(2022)

1) 이전 정부의 경향

-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 '17년 김상조 위원장의 임명과 함께 고발 및 의무고발요청건수 큰 폭 증가
- 특히, 중기부는 종전 연 1~2회 개최하던 심의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하는 등 고발 요청 급증에 기여

2) 윤석열 정부의 경향

- 중기부 등의 고발 요청 건수의 감소추세
- 정부 출범 이후, 기업에 대한 형벌 규정 완화 천명의 영향 (22.0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이행계획서)

공정거래법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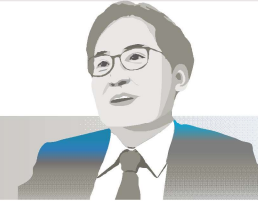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정책 집행 방향

구분	주요 내용
소상공인· 납품업체	<p>‘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 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본부, 대형 유통업체,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중점 감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행위 금지
카르텔	<p>시장의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 근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생활 밀접 분야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 집중 감시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제도·관행 개선
내부거래	<p>사익 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감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집중 점검 새롭게 규율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 우선 실시
전속고발	<p>엄정하고 객관적인 고발 제도 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 의무고발 요청 기한 명시, 절차 투명화 등 기업 예측가능성 제고

공정거래법 개관

향후 공정거래 정책 전망

한 기 정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 (2022. 9. 16.) ▶▶▶ “先難後獲”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

(독과점 폐해 방지, 소비자/중간재 담합 근절,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대기업집단 시책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총수일가 사익 편취/부당내부거래 엄중 제재, 기업에 부담 주는 불필요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에 주력

(납품단가 제때/제값 지급, 기술유용차단, 갑을관계 엄정대처, 디지털 경제 소비자보호)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

(설득력 있는 제도설계, 합리적인 법집행(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

II. 부당경쟁행위

부당공동행위 개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일반

주체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합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행위 유형)를 “합의”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경쟁제한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부당공동행위 개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법 제40조 제항 각 호)

0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제1호)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 및 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가격 설정의 기준을 정하거나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의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포함

02 상품,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제2호)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요구를 거부하거나 과당경쟁금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포함

03 상품의 생산·출고 또는 거래 제한 행위 (제3호)

- 최고·최저 생산량, 필요 재고량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생산량 등 수량의 수준을 정하거나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 출고, 생산 수량을 정하는 행위

부당공동행위 개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법 제40조 제항 각 호)

0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제4호)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포함

0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5호)

-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 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증설 규모를 정하는 행위
-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행위 등

0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제6호)

-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사업자 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는 행위
-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부당공동행위 개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법 제40조 제항 각 호)

- 0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제7호)**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이를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 08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 (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제9호 전단)**
-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
-
- 09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제9호 후단)**
-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대금 대가의 지급조건 정보 (시행령 제44조 제2항)

입찰담합 규제 개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관련 규정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함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입찰담합 규제 개관

입찰담합의 유형

01 입찰 가격 담합

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계약 목적에 따라서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행위

공정위 심결례 (의결 제2014-290호)



- 건설사들은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화통화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한 사실이 인정됨
-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에서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합의를 실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 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

입찰담합 규제 개관

입찰담합의 유형

02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 예정자 또는 낙찰 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공정위 심결례 (의결 제2022-171호)

- 지스포텍 등 3개 업체가 서울시 등 4개 시도체육회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서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예정자로 하는 입찰담합을 합의 및 실행하였다고 판단
-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합의는 입찰참가자 간의 낙찰 경쟁을 무력화시키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함이 명백하다고 판단



입찰담합 규제 개관

입찰담합의 유형

03 수의계약 유도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경우로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 유도하는 행위

공정위 심결례 (의결 제2013-120호)

- 국제 등 농기계 제조·판매업체가 농협에서 실시한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입찰에서 유찰시키고 사전에 입찰가격을 합의하여 투찰한 행위는 수의계약 유도를 통해 낙찰가격을 높이고자 사전에 투찰 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판단
- 농협의 임대사업용 농기계 입찰에서 가격합의 또는 입찰 불참합의를 통해 입찰 예정 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하거나 입찰을 불성립시킴으로써 유찰을 유도하고, 이를 기회로 농협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농기계 장려금율을 낮추기 위한 합의를 한 점이 인정됨



입찰담합 규제 개관

입찰담합의 유형

04 수주물량 등의 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

공정위 심결례 (의결 제2018-060호)



- 2012년 ~ 2015년 간 이레·금영·남경 등 조(組)의 공동행위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받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
- 입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아 자신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 수준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에서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충분히 인정됨

입찰담합 규제 개관

입찰담합의 유형

05 경영간섭 등

입찰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

공정위 심결례 (의결 제2009-20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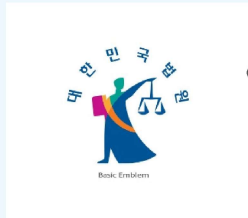
- 조합이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공동구매 사업의 아스팔트 의무구매제에 대하여 참여하지 않았거나 의무 구매량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 특별회비를 부과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한 데 대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판단
- 조합이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구성사업자에게는 물량 배정 시 유리하도록 가점을 주는 한편, 전체 구성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아스팔트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게는 특별회비를 부과한 행위는 단체적 구속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임이 인정됨



입찰담합으로 인한 리스크

입찰담합으로 제재 시 다각적 리스크 존재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정위 등 행정기관의 고발
자진신고 등에 따른 수사
형법상 입찰방해죄



.....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조치

입찰담합이 문제될 경우 행정 제재, 형사 이슈,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입찰담합으로 인한 리스크

입찰담합으로 제재 시 다각적 리스크 존재

- ▶▶ **행위사실** 조달청 발주 부산지하철 턴키 공사에서 6개 건설사는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 가격 등을 합의·실행

행정

형사

민사

공정위 판단

- 6개 건설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2억여원 부과, 들러리 세워 낙찰 받은 3개 건설사 검찰 고발
- 이 사건 공사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판단에 참작
 - ✓ 입찰 당시 전국적으로 대규모 턴키 공사가 급증하여 건설사들의 수주 능력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 ✓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여건 상 실제 입찰 참가가 가능한 업체가 많지 않고, 발주처가 지역의무도급 요건을 두어 **현실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소지**가 있었던 점

항소심 판단

- 원고가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여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회피함에 따라 **이 사건 실질적 경쟁이 제한될 소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담합의 목적이 오로지 유찰 방지를 통한 조속한 공사 진행이라는 공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공동행위가 없더라도 **원고가 결국 수주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입찰담합의 위법성을 소멸시키지 않음

입찰담합으로 인한 리스크

입찰담합으로 제재 시 다각적 리스크 존재

- ▶▶ **행위사실** 조달청 발주 부산지하철 터키 공사에서 6개 건설사는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 가격 등을 합의·실행

행정

형사

민사

공정위 고발

- 3개 건설사 고발
- 이 사건 행위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
- 행위성격 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

검찰 기소

- 고발된 3개 건설사 불구속 기소
- 조달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

법원 판단

- 피고인 3개 건설사에 각 벌금 8,000만원 부과
- 당해 공사는 대규모 공사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그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고, 이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음

입찰담합으로 인한 리스크

입찰담합으로 제재 시 다각적 리스크 존재

- ▶▶ 발주처 원고는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에 대하여 설계비를 보상하였는데, 이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짐. 이에 원고가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하여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함.

행정

형사

민사

원심판단

- 약정에 의한 설계비 반환청구 미인정
- 원고가 피고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대한민국(조달청)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

대법원 판단

-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인정
- 원고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
- 피고들이 입찰담합을 하였음을 숨긴 채 원고에게 설계보상비 지급을 요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
- 원고는 피고들의 담합행위를 알았더라면 피고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됨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의 담합 사례 1

한국수력원자력 발주 ERP 시스템 구축 용역입찰담합 사건



-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 2개사는 2014년 3월, 4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2건의 ERP 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함
 -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재입찰 뿐만 아니라 향후 발주 예정인 용역 입찰도 단독 응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메타넷인터랙티브 영업담당 이사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 기간 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유찰방지를 요청하였음
- 공정위는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100만 원)을 부과했음

피심인 주장 관련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이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유찰방지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고, SAP-BPP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어 해당 용역입찰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경쟁제한 효과가 극히 미미한 점등을 들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배척함
과징금 부과기준을 관련	경쟁제한 효과가 큰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점,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공동행위가 발주처의 유찰방지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부당이득이나 피해규모가 크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함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의 담합 사례 2

조달청 등 공공기관 발주 질량분석기 등 구매입찰담합 사건



- 피심인 11개사는 2010. 5. 25~2016. 8. 30까지 조달청 등에서 발주한 질량분석기 등 3개 분석기기의 구매 입찰 97건에 참여하며, 입찰 건별로 사전에 유선연락 및 메일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합의함

- 공정위는 경쟁가능성이 제한된 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4%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함
 - ✓ 특정업체가 사전 영업을 통해 특정 사양을 입찰규격서에 포함시키게 되면 해당 업체의 낙찰 확률은 높아지나 다른 업체들은 사양을 맞춰 납품하기 곤란하고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수요기관의 기술 검토 절차에서 불합격 될 소지가 있는 등 경쟁 유인이 감소하는 환경
 - ✓ 입찰규격서에 특정 사양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입찰 참여사가 극히 적어 유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입찰 절차 및 납기 지연이 예상되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유찰방지 목적의 측면이 강했던 점, 외자입찰은 해외업체 결정 가격에 수수료만 더해 투찰하므로 이득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함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의 다툼 사례 3

경쟁가능성이 제한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타 사례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제2017-373호)

“입찰 참여 업체들간의 경쟁이 당초부터 제한 되어 있는 관련시장의 현황, 발주처의 피해규모나 입찰 참여 업체들의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 입찰대상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들인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통한 관행 개선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 (감사원 사전컨설팅·적극행정 면책 사례 증가)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9. 4. 30.(목)	보도일시	2019. 4. 30.(목) 09시 이후
계 공	홍보담당관실(992011-2491)	담당부서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
		홍9대	

감사원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면책 사례집」 발간
- 감사원 및 자체감사기구 운영사례 수록, 전 기관 공유, 적극행정 문화 확산 -

I. 발간 배경

- 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공직사회에 더욱 확산시키고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19. 4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발간
- 이 사례집은 '09년부터 운영해온 적극행정면책 제도 및 '19. 1월 새롭게 도입된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절차 등과 함께 그간 감사원 및 각 행정기관들이 처리한 사례를 수록

* 감사원 사전컨설팅 처리실적('19. 4. 26. 기준): 32건 접수, 17건 처리 완료

⑤ 지자체 출연기관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관련

→ 수요처인 G자동차(주)가 설계도면·기술자료 제공 등 개발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유사과제 개발 경험, 기술보안 유지 등을 사유로 H설계업체만 추천하는 경우 H설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됨


- 즉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요건인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품절이나 경험이 필요한 설계용역계약”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회신

⑥ 승객용 승강기 성능개선공사 계약 관련

- F공단은 “승객용 승강기 성능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데도
- “부품 호환성”을 사유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기존 업체인 G사와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 추진사항

2020년 공정위 6개 핵심과제 -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제도·관행 등 발굴·개선



보도자료

2020년 3월 5일(목) 배포

힘이여겨준을 힘내라 대한민국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3월 6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3월 5일(목) 낮 12시

담당과장: 이동원(044-200-4300)

담당: 주재순 서기관(044-200-4301)

고영환, 김경원 사무관(044-200-4303)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겠습니다

-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

※ 오후 2시 이후
방송·인터넷 매체는 3월 5일(목)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3대 분야 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 구축구축에 공정경제의 기반을 내실 있게 확산시키고,
- 디지털 경제 시대에 혁신경쟁이 촉진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갈 것이다.
- 특히, 법 집행과 제도 준비를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거래관행과 기업문화의 변화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위 역량도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④ 민생분야 경쟁축진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

가. 서민피해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 엄정 제재

□ (감시강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의 카르텔 집중 감시

- ▶ 국민 안전·건강 수도·철도장비, 의료기기 등 ▶ 일상생활 통신, 식품, 유통류 등, ▶ 취약계층 피해 유발 농업용자재, 구인구직서비스플랫폼 등등 3개 분야 감시 및 제재

□ (제도개선)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요인 및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

- 발주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조장·관여행위* 규율방안 마련
 - * 발주기관 임·직원이 사전에 낙찰자, 투찰율 등을 정해주는 행위, 발주기관 임·직원이 유찰 방지 등을 위해 입찰 들러리를 요구·지시하는 행위 등
- 관계부처 및 발주기관과 협력하여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입찰제도·관행* 등 발굴·개선
 - * 불필요한 지명입찰 방식 등으로 인해 투찰 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 입찰 참여자간 물량·공구 등 나눠먹기가 용이한 1사 1공구 입찰관행 등

입찰담합 조장·관여행위 규율 제도 개선 의지 표명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 추진사항

2020년 공정위 6개 핵심과제 이후 추진사항 - “담합을 유발하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대한민국 대인합 한국판뉴딜		보도 자료	(배포) 2021. 9. 15.(수)
보도일시	2021. 9. 16.(목) 초간부터 보도 가능 ※ 방송·인터넷 매체는 9. 15.(수)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과 장 박세민 (044-200-4353) 사무관 황정에 (044-200-4358)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 장 김경현 (044-201-3364) 사무관 박경원 (044-201-3372)	

담합을 유발하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 실적기준 등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하였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 적격심사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한다.
- 이번 제도개선은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시장에서 그간 만성적 입찰담합을 유발하던 제도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 이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에 좀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공사비·아파트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제도개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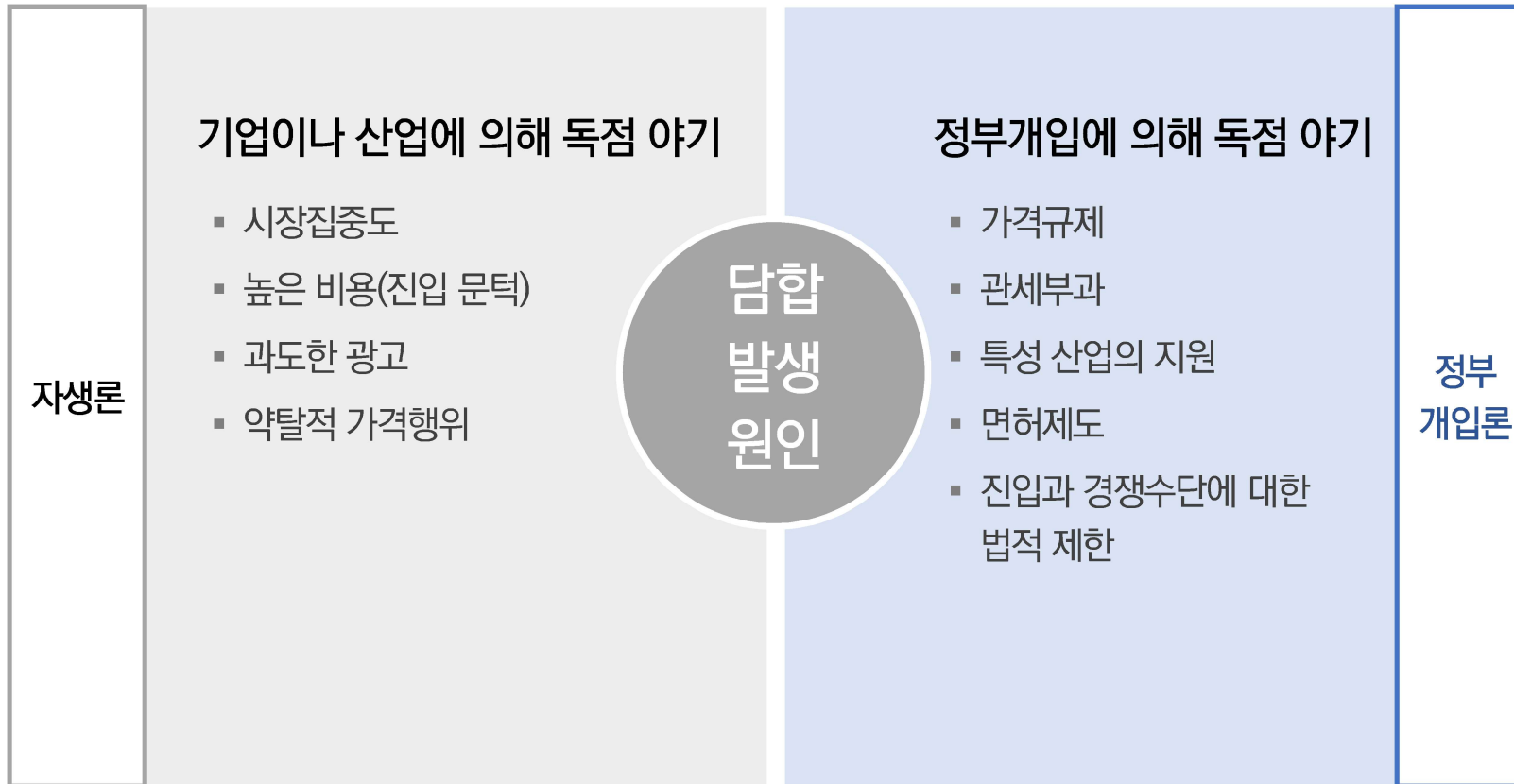
□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실적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22년 시행).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 개정 추진

- **(인정기간)**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한다.
 - 이에 따라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 **(실적건수)** 적격심사시 업무실적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한다.
 - 아파트 보수공사·용역은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므로 많은 공사·용역 경험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 추진사항 : 입찰담합 폐해가 빈번했던 분야에 신규 참여자 진입 기회 확대하여 경쟁 촉진

참고 : 정부·공공기관이 담합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이재우, '제도적 경쟁제한요인 연구 - 공동행위 심결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경제학연구 제47권 제2호, 한국경제학회(1999), 116-130면

참고 : 정부·공공기관이 담합 발생에 미치는 영향

01 사업 및 시장진입 규제

- 정부의 사업·시장진입 규제는 경쟁업체의 참가를 막거나 진입 비용을 높여 기존 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시장의 경합성(contestability)을 낮추는 요인이 됨
 - 가스, 석유, 전력, 수도 등 공익서비스산업, 방송 및 통신, 각종 기간산업 등이 정부의 진입장벽과 법적인 보호 아래 사실상 독점력을 보유
 - 법령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산업에 있어 사업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잠재적 진입위협에 대한 불안이 없기 때문에 규제가 없을 때보다 담합이 쉬움

02 사업자단체와 수의계약

- 법에 근거한 사업자단체 또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단체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단체 회원 간 담합을 조장하는 경우
 - ✓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은 조달청 등의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배정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임의적인 조합가입기준을 정하여 신규업체의 가입을 거부

이재우, '제도적 경쟁제한요인 연구 - 공동행위 심결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경제학연구 제47권 제2호, 한국경제학회(1999), 116-130면

참고 : 정부·공공기관이 담합 발생에 미치는 영향

03 비공식적인 행정지도에 의한 경쟁제한

-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행정지도, 권고, 비공식적 개입 등을 통해 공동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 ✓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들은 집단등기수임에 있어 경쟁을 하는 대신 순번으로 담당을 지정하자는 내용의 공동행위에 합의하였는데, 이 합의를 어기고 단독으로 수임한 법무사를 관할법원에서 징계하여 개입한 사례

04 가격규제

- 물가안정 등 여러 목적으로 정부에서 행하는 다양한 각종 가격규제
- 규제가격은 통상적인 한계가격보다 높게 설정됨
 - ✓ 한국볼링경영자협회 대전 지부와 충북볼링경영자협회는 볼링 요금이 '관할 구청의 신고수리요금임을 이유'로 사실상 관할 구청의 최종 신고수리요금 이상으로 가격 인상

05 표준화 등 비가격규제

- 비가격규제는 제품의 표준화(standardization) 및 품질 및 기준설정 등의 형태로 나타남
- 표준화는 거래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을 증대할 수도 있으나, 표준화 자체가 기업 간 가격고정이나 담합행위를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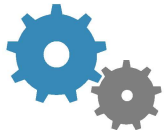
이재우, '제도적 경쟁제한요인 연구 - 공동행위 심결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경제학연구 제47권 제2호, 한국경제학회(1999), 116-130면

담합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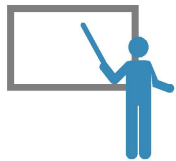
입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 가격 중심 평가 외 공사 특성 별 기술, 사업수행 능력 등 종합심사 필요
- 공사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여 담합 가능성 차단 필요
- 비정상적인 단가 하락에 의한 품질 저하 및 건설업체 부실화 방지 필요
- 턴키제도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하여 설계 비용 보전, 발주 시기 조정 고려



Compliance System 도입 · 구축

-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도입 및 지속적 운영
공공기관 CP참여실적이 크게 저조하다는 평가가 2021 국감에서 지적 된 바 있음
- 발주기관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
개발 운용 등 **입찰담합 사전 예방 장치 마련** 노력



임직원 교육

- 입찰·발주 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 예방 및 조사 대응 교육
- 발주담당자의 **관련법령 및 규정 숙지** 위한 지속적인 교육
- 조달청은 공공기관 불공정조달관행 적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지하는 바,
불공정조달 사례 정보 공유 및 학습 필요

III. 불공정거래행위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체계 개관

법규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위유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행위

- 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한 고객유인
- 거래강제
- 거래상지위 남용
- 구속조건부거래
- 사업활동 방해
-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지원행위)

하위규정

법 시행령 제 52조 및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체계 개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사업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권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성 부정
-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타인과의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포함됨

☞ 판례 및 심결례

- 전동차 제작 납품·구매계약의 주체로서 **서울특별시**의 사업자성 인정 사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경기도시공사), **병원**(지방공사 강남병원) 및 **정부출자기관**, **재출자기관**도 사업자성을 가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2009-278호, 의결 제 2022-025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체계 개관

공정거래법상 위법성판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경쟁제한성

-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성

-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체계 개관

공정거래법상 위법성판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우려”

- 실제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충분
 -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를 나타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

경영상 필요

-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나 거래상의 필요성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를 넘어서는 **사업상의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려**
 -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한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적 취급의 원인이 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은 다른 사유와 아울러 공정한 거래질서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02두12076 판결)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체계 개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 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공정거래법 제49조)
- 과징금 과징금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공정거래법 제50조)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4호)
 - ✓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거래 위반행위는 제외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1호)

공공기관 불공정행위 관련 동향

공공기관 공정문화 정착 필요성 대두 및 후속 논의

공공기관이 계약업체 등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불공정관행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

정부는 공공분야부터 불공정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하고자 2018년 7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2019년 2월 후속조치로 「공공분야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추진 중

2019년 7월 공정위 등 7개 부처는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모범거래 모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을 강조

감사원은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 12월 감사보고서 발간

대형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별도 규율 논의가 2021 국감에서 이루어짐

2019.12.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보고서
한국경제 2021.10.5.자, 공공기관 불공정행위 계속된다...가스공사·인국공 등 10개 기관 공정법 위반 (기사)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01 거래거절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 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외의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범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 자기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 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
-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02 차별적 취급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취급의 경우에는 경제력 집중 우려도 고려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특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비용의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한 가격, 거래조건 차별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상품을 병행취급하는 대리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품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03 경쟁사업자 배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부당하게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란 배제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고 실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것을 요구하지 않음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진입장벽이 없어 계속적 염매로 인해 현재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될 수 있는 경우
- 원재료 등의 품귀가능성에 대비하거나 제품의 안정적 생산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한 부당 고가 매입 행위



범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기관 물품구매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04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의결 제1997-156호)

- 한국전기통신공사 산하기관인 10개 전화국이 병원·호텔 등 업체에 전화기를 무상임대방식으로 제공한 행위는 시외전화역무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 제공행위라고 판단
- 무상임대행위는 경쟁사업자인 데이콤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 일반인의 출입이 많은 병원·호텔 등을 타겟으로 전화기 임차인 및 전화기 이용자의 데이콤 시외전화역무에 대한 선호도 저하와 그 반사적 효과로서 피심인 시외전화역무에 대한 선호도 상승을 도모했음이 인정됨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05 거래강제

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 끼워팔기는 경쟁제한 여부, 사원판매 및 기타의 거래강제는 불공정한 경쟁수단 위주 판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거래강제행위 건 (의결 제2016-024호)



- 수능시험과 EBS 교재를 연계시킨다는 정부 정책으로 얻은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 총판에게 EBS 수능 비연계 교재를 강제로 판매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억5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 ✓ 수능 연계 교재에 비해 잘 팔리지 않는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 실적에 대해 수능 연계 교재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점수를 배정해, 판매 실적이 저조하면 총판 계약을 종료하는 불이익을 줌
 - ✓ 총판은 수능 연계 교재가 매출의 60%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 EBS와의 거래를 중지할 수 없었고, 다른 출판사 교재 대신 EBS의 수능 비연계 교재를 구매할 수 밖에 없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위 사항에 대해 고발여부를 심의한 결과, **공정위에 고발 요청**
 - ✓ 위반행위의 유형이 정부의 수능교재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경우로서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음
 - ✓ 유사 위법 행위의 반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발을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06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건 (의결 제2021-229호)



- **행위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계약 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그 지연기간 동안에는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킴
- **위법성 판단** 이 사건 관련 계약 조항들(지연손해금, 제세공과금 부담)은 LH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LH는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매수인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바, 이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
 - ✓ LH는 사전에 이 사건 대상 토지들의 실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 ✓ LH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 시 적용되는 내부규정상의 각종 의무절차나 후속조치(재산세 또는 미납 잔대금의 토지사용가능시기까지 연기 등)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
- **조치내용**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통지명령, 과징금(5억 6,500만 원) 부과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07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

☑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 건 (의결 제2015-356호)



- **위반행위**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도내 유통대리점간 판매 구역을 설정, 대리점이 판매 구역을 벗어나 판매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규정함으로써 도내 유통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

 - ✓ **구속조건** 사업자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
 - ✓ **부당성 여부** 피심인의 행위는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기 보다는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효율성 증대 효과도 크지 않음**으로 부당성이 인정
- **조치내용** 공정위는 이 사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향후 같은 사안이 재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08

사업활동 방해

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사업활동방해행위 건 (의결 제2000-148호)

- 위반행위** 피심인은 초고속통신망(ADSL-B&A) 구축사업을 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초고속통신망(HDSL)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자기의 초고속통신망에는 유리한 반면 다른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초고속통신망에는 불리한 내용을 가입대상자에게 전달·설명하여 다른 사업자가 모집하는 초고속통신망 가입대상자로 하여금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 조치내용**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 및 범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내림



참고 :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의 원인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의 원인 분석

01 구조적·제도적 요인

-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주로 공급하며 독점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다수 (ex. 에너지, 교통망 확충)
- 공공기관은 설립단계에서 법률상 지위 보장, 정부출자·재정보증을, 운영단계에서 정부로부터 처분권한을 수탁하는 등 민간기업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게 됨
-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해 민간기업들은 공공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

2019.12.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보고서 7면

참고 :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의 원인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의 원인 분석

02 경영평가 등을 의식한 무리한 예산절감 관행

- 일부 공공기관은 부채감축, 이익증대 등을 통해 경영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저가 계약, 비용·부담 전가, 정당한 비용 미지급 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감사원 지적 사례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설계용역 발주 후 공사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관행적으로 자연보상금 미지급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개선공사를 하면서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비용을 휴게소 운영업체에 전가

2019.12.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보고서 9면

참고 :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의 원인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의 원인 분석

03 계약규정의 모호성·미비성

- 계약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해석하면서 **공공기관에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담당자 변경 등에 따라 규정이 일관성 없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불공정한 규정을 제정·운용하더라도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불공정한 관행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음



감사원 지적 사례

-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은 계약 시 연대납부해야 하는 **인지세의 납부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대부분(97.1%) 계약상대방에게 전가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공급자관리지침](내부규정)에 따라 공급자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법령상 근거가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에 최대 10년간 입찰참가 제한**

2019.12.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보고서 9~10면

참고 :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의 원인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의 원인 분석

04 계약 관리·감독 상의 한계

- 공공기관 계약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 관리 감독 상 한계 존재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었던 49개 기관의 2018년 기준 계약건수는 14만 건(금액 33조원))
- 불공정 계약을 맺더라도 이를 적발하고 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감사원 지적 사례

-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등은 '석탄발전소 관리용역' 입찰 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해당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특혜 제공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은 공사계약 시 법령에 따라 원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관리비 등을 **담당자의 규정 미숙지** 등을 사유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

2019.12.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보고서 10면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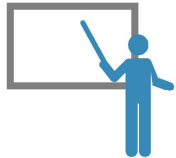
거래리스크 점검

- 공공기관의 특성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관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측면에서** 사전에 면밀한 법률 검토
-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 필요**



Compliance System 도입·구축

-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도입 및 지속적 운영
- ✓ 공공기관 CP참여실적이 크게 저조하다는 평가가 2021 국감에서 지적된 바 있음
-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 등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평가 요소에 반영되는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



임직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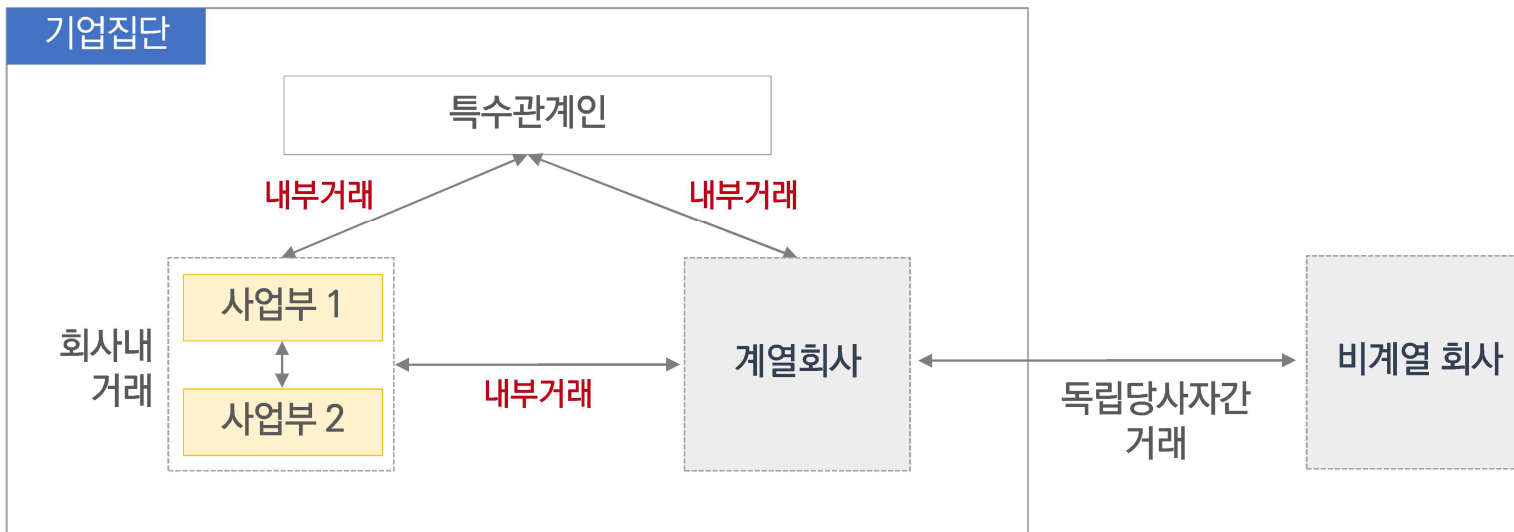
-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 예방 및 조사 대응 교육
- 담당자의 **관련법령 및 규정 숙지** 위한 교육
- 공공기관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침**이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바, 업데이트된 정보 공유 및 학습 필요

Ⅳ. 부당지원행위

내부거래의 개념

내부거래

- **내부거래** : 계열회사간 거래, 특수관계인(총수일가, 임원 등)과 계열회사간 거래 등
- **구분개념** : 회사 내 거래, 독립당사자간 거래 등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요

법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9호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 금지

지원 주체

제한 없음 (모든 사업자)

지원 객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계열회사 요건 불필요)
100% 지분을 보유한 모-자회사의 경우에도 독립거래주체로 판단,
부당지원행위 규율 대상(대법 2001두2034)

금지행위 유형

- ① 정상 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②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거래 (통행세)

부당성 판단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입증 필요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

지원의도

해당 거래가 지원객체를 지원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지원행위성

- 상당히 유리한 조건 — 정상가격보다 낮은/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
- 상당한 규모 — 거래물량만으로 거래규모가 확보되어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 등
- 통행세 거래 —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거래

부당성

그 행위로 인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었는지 여부 (공정거래저해성)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1) 지원 의도

지원의도

지원행위성

- 상당히 유리한 조건
- 상당한 규모
- 통행세 거래

부당성

- 법문상 명시된 요건은 아니나, 법원·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 판단시 하나의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음
- 거래의 배경, 거래상대방 결정 방식,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판단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2) 지원행위: 상당히 유리한 조건

지원의도

지원행위성

- 상당히 유리한 조건
- 상당한 규모
- 통행세 거래

부당성

지원주체가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정상가격



실제거래가격

매입자(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 귀속

정상가격



실제거래가격

판매자(지원주체)에게
경제상 이익 귀속

- ❖ 정상가격 : 지원주체와 객체 간 특별한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거래 가격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2) 지원행위: 상당히 유리한 조건

지원의도

지원행위성

- 상당히 유리한 조건
- 상당한 규모
- 통행세 거래

부당성

정상 가격의 판단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①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②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③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함

입증 책임

-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신세계사건)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2) 지원행위: 상당한 규모

지원의도

지원행위성

- 상당히 유리한 조건
- 상당한 규모
- 통행세 거래

부당성

① 상당한 규모의 거래

▶ 몰아준 물량이 지원주체의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당해 업체의 규모 및 능력, 관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원객체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 상당히 유리한 조건

▶ 산업평균이익율, 비계열거래의 영업이익률/매출총이익율, 단가인상율, 물가상승률, 매출액증가율 등에 비추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 여부 판단

③ 과도한 경제상 이익 제공

▶ 수의계약형식의 현저한 물량 수주, 총자본대비 높은 영업이익율, 높은 자기자본 및 매출액 증가율 등 고려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2) 지원행위: 상당한 규모

지원의도

현저한(법 개정 후 '상당한') 규모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7.1.25. 선고 2004두7610 판결)

지원행위성

- 상당히 유리한 조건
- 상당한 규모
- 통행세 거래

- “현저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 하여 바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 ✓ 과다한 경제상 이익제공은 수의계약형식의 현저한 물량 수주, 총자본대비 높은 영업이익율, 높은 자기자본 및 매출액 증가율 등을 의미함
-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지원행위 성립 가능

부당성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2) 지원행위: 통행세 거래

지원의도

제45조 제1항 제9호 나목 통행세 규정

- 2014. 2. 14.부터 시행, 시행일 당시 계속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2015. 2. 15.부터 적용

지원행위성

- 상당히 유리한 조건
- 상당한 규모
- 통행세 거래

직거래가 상당히 유리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미미한 다른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

또는

직거래가 상당히 유리함에도 거래단계에
추가된 다른 회사의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



부당성

A와 거래상대방이 직접 거래할 경우 더 유리

계열사 A1의 개입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직거래비용의 총합 > A1이 개입된
거래비용의 총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3) 부당성

지원의도

지원행위성

- 상당히 유리한 조건
- 상당한 규모
- 통행세 거래

부당성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강화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쟁조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일정 거래분야에서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법인에 대한 제재

개인에 대한 제재

■ 행정적 제재 :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

① 시정조치 ②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의 10% 범위 내(정액의 경우 40억원)의 과징금* 부과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 (i) 지원금액(지원금액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지원성 거래규모의 10%) X 부과기준율(최대 80%)의 산식으로 계산되는 기본금액에
- (ii) 가중·감경 등 일부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출됨

■ 형사처벌 : 지원주체

- ✓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지원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법인에 대한 제재

개인에 대한 제재

- 형사처벌 : 공정위의 고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개인의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지원객체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	조세범처벌법 제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포탈세액의 규모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도 가능)에 처할 수 있음

부당지원 제재 사례(1)

한국도로공사의 수의계약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의결 제2015-051호)



<p>거래상 지위남용 (불이익제공)</p>	<p>한국도로공사는 국내 고속도로 건설 공사도급계약을 건설사들과 체결함에 있어 휴지기간 동안 건설사들에게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는 부과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함</p>
<p>부당지원행위</p>	<p>한국도로공사는 2007~2014년 기간 동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 설립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의 평균낙찰률보다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퇴직자 설립회사를 지원</p>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불이익제공) 및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9,800만원) 부과함

부당지원 제재 사례(1)

한국도로공사의 수의계약에 의한 부당지원행위(2017두58076)



지원행위성

상당히 유리한 조건 : 경쟁입찰로 진행된 위탁계약의 낙찰률을 정상가격으로 비교한 결과,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낙찰률이 8.5~1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실제가격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체결)	정상가격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체결)
95.0~97.5%	86.4~86.5%

상당한 규모의 거래 : 계약 금액이 932억원이 넘고, 지원객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

부당성

지원기간이 6년 이상으로 장기간이고, 지원 규모가 총 932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인 점, 지원객체가 안전순찰 업무에 특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와 안전순찰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행위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 (원고 패)

부당지원 제재 사례(2)

한국전력공사 소속회사의 부당지원행위(의결 제2015-087호)



한국전력공사의 요청으로 5개 화력발전사는 2009~2012년 한전산업개발과 용역계약을 체결, 연장

- 5개 화력발전사는 한전산업개발과 계약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이루어진 경우보다 12~13%p 높은 낙찰률을 적용, 5개 화력발전사와 한전산업개발 간 거래금액은 **한전산업개발 매출액의 34.81%에 해당**
- 이는 현저히 높은 대가로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 부당지원에 해당

한국전력공사는 2009~2013년 전우실업과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법원에 불복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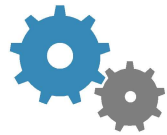
- 한전은 전우실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이루어진 경우보다 6~11%p 높은 낙찰률을 적용, **한전과 전우실업 간 거래금액은 전우실업 매출액의 8%에 해당**
- 현저히 높은 대가로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 부당지원에 해당

부당지원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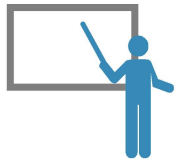
거래리스크 점검

- 내부거래 필요성 점검 (정당성 논거 확보, 경제적 효과 분석)
- 거래 상대방 선정 절차의 합리성 확보 및 수의계약 시 정당성 논거 구비
- 계약 조건(거래가격, 비계열 거래와의 조건 차이 등)에 대한 점검



계약체결 이후 리스크 저감 방안

- 내부품의서 등 세부자료의 보존
- 계열거래에 대한 지속적 검토



임직원 교육

-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 예방 및 조사 대응
- 담당자의 **관련법령 및 규정 숙지** 위한 교육



Thank you



감사합니다